

##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

일 시 : 2026. 3. 20(금) 09:00

장 소 : 인천광역시 회의실

보고 1. 공노총 광역연맹 제도개선 안건 제출

보고 2.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



전국광역 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The Federat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Unions

1	시간외수당 단가 규정 개선
---	----------------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시간외 단가 적용</li> <li>■ 2011년 기본급 통합에 따른 70%⇒59%, 2012년 주5일제 55%</li> <li>■ 민간의 최저임금 시간외수당에 맞는 형평성을 위한 단가 조정.</li> </ul>																						
현황 및 문제점	<p>○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gt;</p> <p>1. “근로자”란 <b>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b>을 말한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b>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b>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간외 수당 월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59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조정함.</li> <li>- 당시 민간 최저임금 시간외수당과 공무원 시간외수당을 고려하여 변경하였으나 2026년 14년만에 9급에 대한 지급기준을 60% 인상하였으나 현재 민간대비(최저임금 10,320원, 시간외수당 15,480원) 4,530원 작은 액수로 공무원 지급률 변경 필요.</li> </ul>																						
세부 요구사항	<p><b>1. 지급률 단가 개선(9급 기준호봉 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액률 조정) 현행 60% → 개선 85%[기준호봉/209/지급률*1.5]</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9급 10호봉</th> <th style="width: 15%;">지급률</th> <th style="width: 15%;">시간외 단가</th> <th style="width: 15%;">민간대비</th> <th style="width: 15%;">26년 최저임금 시간외 단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2,542,700</td> <td>60%</td> <td>10,949</td> <td>△4,830</td> <td rowspan="5" style="vertical-align: middle;">15,480</td> </tr> <tr> <td>70%</td> <td>12,774</td> <td>△2,705</td> </tr> <tr> <td>80%</td> <td>14,599</td> <td>△880</td> </tr> <tr style="border: 2px solid red;"> <td>85%</td> <td>15,511</td> <td>31</td> </tr> <tr> <td>90%</td> <td>16,424</td> <td>944</td> </tr> </tbody> </table> <p><b>1. 해당 계급 또는 계급 상당 기준호봉 기준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9급(10호봉), 8급(10호봉), 7급(10호봉), 6급(10호봉)</li> <li>- (조정) 9급(10호봉), 8급(15호봉), 7급(20호봉), 6급(25호봉)</li> </ul>	9급 10호봉	지급률	시간외 단가	민간대비	26년 최저임금 시간외 단가	2,542,700	60%	10,949	△4,830	15,480	70%	12,774	△2,705	80%	14,599	△880	85%	15,511	31	90%	16,424	944
9급 10호봉	지급률	시간외 단가	민간대비	26년 최저임금 시간외 단가																			
2,542,700	60%	10,949	△4,830	15,480																			
	70%	12,774	△2,705																				
	80%	14,599	△880																				
	85%	15,511	31																				
	90%	16,424	944																				

## 최저임금 연도별 시간당 금액

(단위 : 원)

연도	민간			공무원(9급 기준)		지급률
	최저임금	연장근무수당(시급*150%)	야간수당(시급*50%)	공무원 초과수당	야간수당	
2011	4,320	6,480	2,160	6,555	2,185	70%⇒59%
2012	4,580	6,870	2,290	6,878	2,293	226⇒209, 55%
2013	4,860	7,290	2,430	7,104	2,368	
2014	5,210	7,815	2,605	7,247	2,416	
2015	5,580	8,370	2,790	7,573	2,524	
2016	6,030	9,045	3,015	7,830	2,610	
2017	6,470	9,705	3,235	8,117	2,706	
2018	7,530	11,295	3,765	8,357	2,786	
2019	8,350	12,525	4,175	8,528	2,843	
2020	8,590	12,885	4,295	8,798	2,933	
2021	8,720	13,080	4,360	8,887	2,962	
2022	9,160	13,740	4,580	9,160	3,011	최저임금과 동일
2023	9,620	14,430	4,810	9,620	3,062	
2024	9,860	14,790	4,930	9,860	3,257	
2025	10,030	15,045	5,015	10,579	3,526	
2026	10,320	15,480	5,160	10,949	3,650	9급 60% 적용

## II

### 2011년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1

#### 일부 공통수당(가계지원비·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

- 기본급 연동수당(3종) 지급률 하향 조정(호봉제)
  - 초과근무수당 : 기준호봉 봉급액의 70% → 59%
  - 연가보상비 : 12.31 현재 기본급의 100% → 86%
  - 대우공무원수당 : 기본급의 4.8% → 4.1%
-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직종간 보수 균형유지를 위해 일부 직종 수당을 보전 및 감액 조정

## 2

# 재난·안전 관리자 수당 대상 확대 및 병급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 안전 담당자 기준을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 중</li> <li>■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기안전관리법,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분야 근무 공무원도 수당지급 확대</li>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li> <li>○ 지방의회와 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특수직무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의 병급 허용</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b></li> <li>* 제51조(특수업무수당 등 지급) 정부는 특수업무수당과 업무대행수당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노조와 지속적으로 논의한다.</li> <li>○ <b>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신설 및 병급허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사회 안전관리 강화로 각종 시설에 전기·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에 어려움이 있음.</li> <li>- 책임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열악하여 업무 기피현상 발생</li> <li>- 전기, 가스 등의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기술정보수당을 받는 것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된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남.</li> <li>- 또한, 학교나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기술정보수당과 다른 특수업무수당의 병급이 허용되지 않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차별 발생으로 근무의욕 저하</li> </ul> </li> <li>○ <b>특수업무수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전가용량 1,000kW 이상 전기시설의 경우 소속 직원 중 전기기사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1,000kW 미만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용역수행이 가능(연간 500~1,000만원 용역수수료 지급)</li>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으며, 책임에 비해 권한과 처우가 열악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기피하는 실정이며 자격증 취득사실 미신고 또는 부서간 업무지원 등 심각한 실정임.</li> </ul> </li> </ul>

세부  
요구사항

○ 기술정보수당(신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및 별표9
- 기술정보수당(신설)

지급대상(신설)	지급액 및 지급방법
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자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동일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병급허용 조치

○ 기술정보수당과 병급 허용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별표9의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과 제11호 마목과 자목 병급 허용
- 마목 :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자목 :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일반직 공무원
- \*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병급 허용으로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동시에 받고 있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및 별표9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장려수당 신설

지급대상(신설)	지급액 및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kW 이상 400,000원</li> <li>- 1,000kW 이하 200,000원</li> </ul> </li> </ul>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피현상 해소로 지대한 예산절감 효과 기대

### 3

##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인력 기준인건비 확대 또는 예외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인력 확대(3조2교대 -&gt; 4조2교대) 및 당직 통합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을 위한 기준인건비 확대 또는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주 40시간 근무 원칙</li> <li>○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안내]-행안부 지인과-47(25.11.27.)</li> <li>○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운영)</li> <li>○ 인구수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li> <li>○ 복무규정에 따른 주40시간을 위한 4조2교대 근무 필요</li> <li>○ 지자체 규정에 따라 최소 인력만 운영 중임.</li> <li>○ 중앙정부의 당직근무 개선에 대한 방침으로 통합운영에 필요한 추가인력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li> </ul>
세부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상황실 365일 상시 근무에 따른 4조2교대 근무 전면시행</li> <li>2. 인수수에 대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인력 배치 기준 명확화</li> <li>3.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기준에 상황실 근무인력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li> </ol>



행정안전부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직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당직운영 효율화를 위한 당직근무 유형(본청, 읍·면·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각 지자체 당직운영 개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광역·기초 본청

- ① 기능 통합형(Ⅰ형), ② 기능 부분 통합형(Ⅱ형), ③ 공간 통합형(Ⅲ형)

읍·면·동

- ① 재택당직(Ⅰ형), ② 당직폐지(Ⅱ형)

3. 참고로, 당직운영 개선 사항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지표」(8.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 다. 일하는 방식 혁신)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방의회에도 본 문서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안내 1부. 끝.



수신자 서울특별시(총무과장), 부산광역시(인사과장), 대구광역시(총무과장), 인천광역시(총무과장), 광주광역시(총무과장), 대전광역시(운영지원과장), 울산광역시(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운영지원과장), 경기도지사(총무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충청북도지사(행정운영과장), 충청남도지사(운영지원과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전라남도지사(총무과장), 경상북도지사(행정지원과장), 경상남도지사(행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주요관	담당부서	행정사유관	이행야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2025. 11. 27.
협조자				장	구호선	
시행	지방인사제도과-47	(2025. 11. 27.)		접수	인사과-36286	(2025. 11. 27.)
주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어전동}				www.aois.go.kr
전화번호	044-205-3358	팩스 번호	044-204-8953			/ rsaehd@nlsil.go.kr / 비공개

---

# 기준인건비 산정 지침

---

2025. 3월



**행 정 안 전 부**  
**자 치 분 권 제 도 과**

# || 목 차 ||

I. 기준인건비 제도 개요 ..... 1

II. 세부 산정 절차 ..... 2

① 행정수요 지표 확인 ..... 3

② 기초자료 조사 ..... 3

③ 적정인력 산출 ..... 3

④ 단가 산정 ..... 3

⑤ 기준인력 산정 ..... 4

⑥ 기준인건비 산정 ..... 5

III. 추가 적용사항 ..... 6

①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6

② 자율운영범위 적용 ..... 7

# I 기준인건비 제도 개요

○ (개념) 행안부장관이 매년 산정하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기구·정원을 자율 관리하는 제도

\* 보수,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 (도입취지) 인력 운영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준 인건비 초과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통해 조직 효율화 유도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 「기구정원규정」 제4조

※ 「기구정원규정」 §4③에 따라 산정방법 마련 및 산정 지침 수립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구정원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산정방식) 기준인력 x 인건비 단가 + 기타직 인건비

기준 인건비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준인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td> </tr> </table>	기준인력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건비 단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td> </tr> </table>	인건비 단가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타직 인건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원경찰, 임기제 등)</td> </tr> </table>	기타직 인건비	(청원경찰, 임기제 등)
기준인력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인건비 단가												
공무원(일반, 소방), 공무직												
기타직 인건비												
(청원경찰, 임기제 등)												

- (기준인력) 전년도 기준인력에 9개 행정수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 적정 인력, 국가정책 수요 및 지역 현안 수요 등 반영·산정

\* 인구, 65세이상 인구, 외국인 수, 주간인구, 사업체수, 자동차수, 장애인수, 면적, 농경지면적

- (인건비 단가) 자치단체별 인건비 결산액 ÷ 분기별 평균 현원

○ (교부세 반영) 기준인건비('25년 약 36.3조)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인건비 항목)에 반영 및 자치단체 교부

구분	주요 내용	시기
사전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개 행정수요 지표(인구, 면적 등) 통계 확인 - 통계청, 국토부, 법무부 등의 공시자료 기준</li> <li>자치단체 기초자료 조사 - 공무원 정·현원, 인건비 예·결산 내역 등 ※ e호조시스템 데이터 활용 인건비 결산액 확인</li> <li>자치단체 인력수요 제출 - 자체진단을 통해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 선행 후 부족분 요구</li> </ul>	9월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9개 유형별 적정인력 함수 도출 - 9개 지표(독립변수), 공무원 정원(종속변수)의 최근 11년간 데이터 활용 - 독립변수-종속변수 관계를 가장 설명할 수 있는 9개 행정지표별 회귀계수 및 정원함수 도출 ※ 자치단체 9개 유형별로 적정인력 함수는 상이</li> <li>자치단체 유형별 정원함수에 개별 자치단체 행정지표 값 입력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 정원함수 예시('25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시)                      = '25년 적정인력 = (인구 회귀계수 x '23년 인구) + (면적 회귀계수 x '23년 면적) + (65세 이상 인구 회귀계수 x '23년 65세 이상 인구) + ...                 </div> </li> <li>자치단체별 적정인력 산출</li> </ul>	10월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단체 기초자료 토대로 인건비 단가 산출</li> </ul>	
단가 산정		
기준 인력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기준인력에 적정인력,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등 활용</li> </ul>	11월
기준 인건 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준인건비 산정방향 수립</li> <li>기준인건비 예비산정 ※ 11.30. 까지 자치단체 송부(이의신청 실시, 최소 일주일)</li> <li>기준인건비 최종산정 ※ 교부세과 및 자치단체 최종 송부</li> </ul>	12월

## 1 행정수요 지표 확인

○ 정부 공시자료 활용, 9개 행정수요 지표\* 조사 후 자치단체 공유 확인

- \* ① 인구, ② 면적, ③ 주간인구, ④ 65세 이상 인구, ⑤ 사업체수, ⑥ 자동차수, ⑦ 장애인수, ⑧ 외국인 인구, ⑨ 농경지면적

## 2 기초자료 조사

○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자료 조사 서식(16종) 자치단체 송부·취합

- 결산액은 자치단체 제출 결산액과 e호조 결산액 대조
- 분기별 현원은 자치단체 제출 자료와 공무원 인사 통계 비교

### < 조사 자료(예시) >

- ▶ 공무원 정·현원, 기타직·공무직 현황, 국가정책·지역현안 수요 배정인력 총원 실적
- ▶ 일반직·기타직·공무직 인건비성 경비 예·결산액
- ▶ 별도정원(신규임용·육아휴직·교육·직무파견) 현황, 공무직 전환계획 및 실적 등

## 3 적정인력 산출

① (지역유형 분류) 242개 자치단체를 9개 유형\*으로 분류

- \* ① 특·광역시(8개), ② 도(8개), ③ 50만 이상 시(19개), ④ 50만 미만 시(23개), ⑤ 도농통합시(33개), ⑥ 5만 이상 군(33개), ⑦ 5만 미만 군(49개), ⑧ 특별시 자치구(25개), ⑨ 광역시 자치구(44개)

② (산식 도출) 최근 11년간 자치단체 유형별로 공무원 정원과 9개 행정수요 간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계수를 통계적으로 산정

③ (적정인력 산출) 산정된 계수를 반영한 자치단체 유형별 적정인력 함수에 개별 자치단체의 전년도 행정수요 지표값 대입·산출

## 4 단가 산정

###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① 자치단체 개별결산단가 산출

⇒ 자치단체가 제출한 직종별 결산액\* ÷ 분기별 현원\*\*

\*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결산액은 미인정('24년~)

\*\* 일반임기제공무원 인건비는 결산시 기타직에 포함 → 공무원 현원 평균 산출시 제외

② 자치단체 9개 유형별 평균단가 산출

⇒ 9개 유형별\* 자치단체 개별결산단가(①) 합계 ÷ 해당 유형 자치단체 수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도농통합시, 5만 이상 군, 5만 미만 군, 특별시 자치구, 광역시 자치구

③ 유형별 평균단가(②)를 통해 개별결산단가(①) 보정

⇒ {결산단가(①) + 유형평균단가(②)} ÷ 2

④ 보정단가(③)에 결산액 연도기준 차년도·차차년도 보수인상률\* 적용

\* 예) '2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 '23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 하였으므로, '24·'25년 보수인상률 적용

⇒ 보정단가(③) x '24년 보수인상률 x '25년 보수인상률

**【 공무원(무기계약직) 】**

○ (집행율 90% 이상) ①~③ 방식 중 가장 높은 단가 적용

- ① '23년 결산단가(결산액 ÷ 현원) x '24~'25년 보수인상률

- ② '23년 보정단가\* x '24~'25년 보수인상률

\* (결산단가 x 0.5) + (시·도별 평균단가 x 0.25) + (9개 지역유형별 평균단가 x 0.25)

- ③ '24년 인건비 단가 x '25년 보수인상률

○ (집행율 90% 미만) '24년 인건비 단가 적용\*(보수인상률 미반영)

\* 단, 위 ① 또는 ②의 결과값이 '24년 인건비 단가 초과시 ① 또는 ② 적용

**⑤ 기준인력 산정**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 (기준인력 동결) 전체 기준인력 규모는 '22년 수준에서 유지

○ (탄력적 기준인력 배정) 지역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수요 감소 자치단체 기준인력 감축 및 행정수요 증가 자치단체 증원

○ (별도정원) 교육훈련(국내·외) 및 직무파견\*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 국제행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4대협의체 등 파견인력

**【 공무원(무기계약직) 】**

○ '24년 전환 인원은 100%, '25년 전환계획 인원은 50% 인정\* 후 차년도에 정산하며 신규채용 실적은 미인정

\* 단, 집행율 90% 미만 시 전환계획 인원 50% 미인정

**⑥ 기준인건비 산정**

**【 공무원(일반직+소방직) 】**

- (기본방식) 일반직과 소방직 기준인력에 각각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추가반영1) 별도정원(정원외) '25년도 신규임용 예정자 인건비\*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 직급별 2호봉 봉급 적용,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포함

- (추가반영2) 결원보충된 육아휴직자 수당 반영

### 【 공무원(무기계약직) 】

- (기본방식) 공무원 기준인력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

※ 집행율 90% 미만 시 공무원 기준인건비 동결('24년)

- (추가반영) 공무원 퇴직금 예상액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 【 기타직 】

- (기본방식) '08년 기타직 보수 결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보수인상률 반영

- (추가반영) 실무수습 인건비 예상액 반영 및 사후 실제 결산액으로 정산

## III 추가 적용사항

※ '25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시 기준추후 변동 가능

### 1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 미만이면 인센티브, 초과하면 페널티 부여

※ 페널티는 '19년도 인건비까지 적용 후 폐지하였으나, '25년도 인건비부터 페널티 도입 및 인센티브 2배 확대('22.12.3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와 인건비 결산액을 통해 해당연도 보통교부세에 반영\*

\* '23년도 수치로 산정된 페널티는 '25년도 보통교부세에 반영

※ 인센티브·페널티 산정 시, 기준인건비 및 인건비 결산액 각각에서 소방직 항목 제외

- (인센티브) 기준인건비 절감액(기준인건비-인건비 결산액) 기준으로 계산\*

\* 인센티브 반영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x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절감액 x 200%

- (페널티) 기준인건비 초과액(인건비 결산액-기준인건비) 기준으로 계산\*

\* 페널티 반영액 = 초과지출허용액 - 전전년도 기준인건비 초과액

※ 초과지출가능항목은 페널티 산정 시 제외

< 인센티브·페널티 산정 예시 >

\* 예시의 결산액·기준인건비는 소방직 제외 금액

- ① (인센티브) 기준인건비 100억원, 인건비 결산액 80억원인 경우  
 ⇒ 인센티브 반영액 : (20억원/100억원)×20억원×200% = 8억원
- ② (페널티) 기준인건비 100억원, 인건비 결산액 130억원, 초과지출 허용액 20억원인 경우  
 ⇒ 페널티 반영액 :- (130-100)억원 + 20억원 = - 10억원

< 참고 : 초과지출가능항목 >

항목	주요 내용
① 공무직(무계약) 근로자 퇴직금	▸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직(무계약) 근로자 퇴직금
② 실무수습 인건비	▸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실무수습자의 '23년 결산액
③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액	▸ '23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은 '21~'23년도 연금부담금 보전금 부담률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 보전금 증가액 ※ '23년 연금부담금 보전금 납부액 - '21년 연금부담금 보전금 납부액

② 자율운영범위 적용

□ 운영 개요

○ (목적) '25년이 페널티 도입 첫 해임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교부세 페널티 부담 완화를 위해 자율운영범위\* 도입

\* '19년까지 운영 → '20년 이후 페널티와 함께 폐지

○ (방식)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운영범위 차등 부여

< 자율운영범위 산정 방식 >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①60% 이상은 3% / ②50~60%는 2% / ③50% 미만은 1% 부여  
 - 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지방재정위기 '주의' 단계)이면 1%p 감축
-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는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3% 부여

○ (적용) 교부세 페널티 부과 자치단체에 대한 감경사유로 활용

- ① 페널티 부과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율운영범위 산정(1~3%)
- ② 기존 페널티 금액에서 인건비 초과 가능 금액만큼 페널티 감경

□ 자율운영범위 인건비(초과 가능항목) 산식

- 자율 운영 인력: '23년 일반직 기준인력 × 자율운영범위
- 자율운영범위 인건비: 자율운영인력 × '23년 일반직 단가

# 4

## 관리업무수당 지급 지자체장 권한 부여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 이상부터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근무조건 개선-6급이하)</li> <li>○ 중간관리자급의 습관성, 대기성 초과근무가 관행적으로 지속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장급이 실무자보다 오히려 초과근무가 많음</li> </ul> </li> <li>○ 공무원 개인의 경제적 사정, 성향 등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고정적 보수로 고착화되어 습관성 초과근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시 초과근무 사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초과근무 (1인당) : 5급 40시간(기본 10시간 포함)</li> </ul> </li> </ul> </li> </ul>										
세부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팀장급 관리업무수당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과장급(광역 4급, 기초 5급)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관리업무수당 정액 지급</li> <li>- (개선) 팀장급(광역 5급) 이상부터 지자체 재량으로 직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li> </ul> </li> </ul> <div data-bbox="395 1232 1369 1921"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b></p> <p><b>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b>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b>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b>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b>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b>,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b>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b></p> <p>*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lt;별표 12&gt;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p> <table border="1" data-bbox="411 1512 1353 1892"> <thead> <tr> <th>구분</th> <th>지급대상</th> </tr> </thead> <tbody> <tr> <td>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li> <li>·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5급(팀장) 일반직 공무원(신설)</li> </ul> </td> </tr> <tr> <td>연구직공무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직 공무원(신설)</li> </ul> </td> </tr> <tr> <td>지도직공무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도직 공무원(신설)</li> </ul> </td> </tr> <tr> <td>교육공무원</td> <td>(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div>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li> <li>·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5급(팀장) 일반직 공무원(신설)</li> </ul>	연구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직 공무원(신설)</li> </ul>	지도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도직 공무원(신설)</li> </ul>	교육공무원	(현행과 같음)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li> <li>·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5급(팀장) 일반직 공무원(신설)</li> </ul>										
연구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연구직 공무원(신설)</li> </ul>										
지도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li> <li>·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도직 공무원(신설)</li> </ul>										
교육공무원	(현행과 같음)										

## 2026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6,053	72,238,500	866,862,000	
		20		144,477,000	1,733,724,000	
		30		216,715,500	2,600,586,000	
		40		288,954,000	3,467,448,000	평균 지급기본시간 포함
		57		411,759,450	4,941,113,400	

	부산시 본청 5급	5급(01520253)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9%	4,066,800	164,705,400	1,976,464,800
				4,649,400	188,300,700	2,259,608,400
				5,082,700	205,849,350	2,470,192,200
				5,401,500	218,760,750	2,625,129,000
				5,617,200	227,496,600	2,729,959,200

## 2025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5,510	69,795,000	837,540,000	
		20		139,590,000	1,675,080,000	
		30		209,385,000	2,512,620,000	
		40		279,180,000	3,350,160,000	평균 지급기본시간 포함
		57		397,831,500	4,773,978,000	

	부산시 본청 5급	5급(01520253)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9%	3,929,300	159,136,650	1,909,639,800
				4,492,200	181,934,100	2,183,209,200
				4,910,800	198,887,400	2,386,648,800
				5,218,800	211,361,400	2,536,336,800
				5,427,200	219,801,600	2,637,619,200

## 2024년도 시간외 단가 기준

	부산시 본청 5급	시간외 시간	시간외수당	월 평균 수당금액	연간 수당 금액	비고
시간외 수당	450명	10	15,059	67,765,500	813,186,000	
		20		135,531,000	1,626,372,000	
		30		203,296,500	2,439,558,000	
		40		271,062,000	3,252,744,000	평균 지급기본시간 포함
		57		386,263,350	4,635,160,200	

	부산시 본청 5급	5급(01520253)	관리업무수당	월평균 수당 금액	연간 수당 금액	연간 절감액(40H 기준)
관리업무 수당	450명		9%	3,814,900	154,503,450	1,854,041,400
				4,361,400	176,636,700	2,119,640,400
				4,767,800	193,095,900	2,317,150,800
				5,066,800	205,205,400	2,462,464,800
				5,269,100	213,398,550	2,560,782,600

## 5

## 직급보조비 6급이하 상향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직급보조비)</li> <li>■ 6급이하 공무원 5급(상당) 지급액으로 상향</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임금·수당 개선)</li> <li>○ 8~9급 : 175천원, 7급 : 180천원, 6급 185천원, 5급 250천원</li> <li>○ 2001년 1월 29일 신설된 직급보조비는 대외협력, 정책결정참여, 타기관 업무 협의 등에 따른 직무상 품위 유지비 및 업무수행 경비 성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됨</li> <li>○ 6급이하 실무자는 타기관과 업무 협의 및 대외협력 추진 증가로 관련 추진비용 증가로 5급 상당에 따른 250천원까지 인상 필요</li> </ul>
세부 요구사항	<p>1. 6급이하 직급보조비 일괄 상향</p> <p>- (6급이하 차등 조정) 175천원 ~ 185천원 → 일괄 250천원</p>

## 6

## 노조 후원회비 연말정산 기부금 적용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일반기부금 및 시행령 제80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제2호 가목 변경</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 2020 정부교섭 실무교섭 합의사항</li> <li>○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b>조합비</b></li> <li>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b>납부한 회비</b></li> <li>다.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회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b>납부한 회비</b></li> </ul> </li> </ul>
세부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가목 조합비를 회비 변경 또는 후원회비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b>납부한 조합비</b></li> <li>- (변경 1)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b>납부한 회비</b></li> <li>- (변경 2)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b>납부한 조합비 및 후원회비</b></li> </ul> </li> </ol>

## 7

## 무상교육 절감재원 활용 “대학등록금 지원제도(가칭)” 신설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절감된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학비 지원) 재원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제도(가칭 ‘대학등록금 지원금’)를 신설할 것.</li> <li>○ 제도는 실비 지원 원칙과 상한 설정 등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설계할 것.</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 학비 부담은 경감되었으나,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가계 부담이 크고 다자녀·중저연차 공무원에게 체감 부담이 큼.</li> <li>○ 교육비 부담 구조가 ‘고교 → 대학’으로 이동했음에도, 기존 보수·복지 체계가 변화에 충분히 연동되지 못해 현장 체감형 지원 공백이 발생함.</li> <li>○ 교육비 부담 완화는 실질적 복지효과가 커 근속유지·사기진작 및 일·가정 양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li> </ul>
세부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도 신설(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대학등록금 지원금(자녀대학학비 지원) 신설</li> <li>-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고교) 절감재원을 대학 등록금 지원 재원으로 전환·활용</li> </ul> </li> <li>2. 지원대상 및 범위(형평·예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공무원 자녀(학부) 대학 재학생 등록금</li> <li>- 방식: 등록금 고지서 기준 실비 지원 원칙</li> <li>- 상한: 학기당 또는 연간 상한액 설정</li> </ul> </li> <li>3. 우선순위·단계적 확대(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저연차, 중저소득 구간 등 우선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가능</li> </ul> </li> <li>4. 집행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당 신설, 맞춤형복지(복지포인트) 항목 신설, 또는 별도 교육비 지원사업 등 지자체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모델 제시</li> </ul> </li> <li>5.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로 복지 체감도 상승, 저연차·중견 공무원 사기 진작</li> </ul> </li> </ol>

## 8

## 공로연수 대상 근속요건 완화(20년 → 15년 또는 10년)로 퇴직 준비 지원 및 승진적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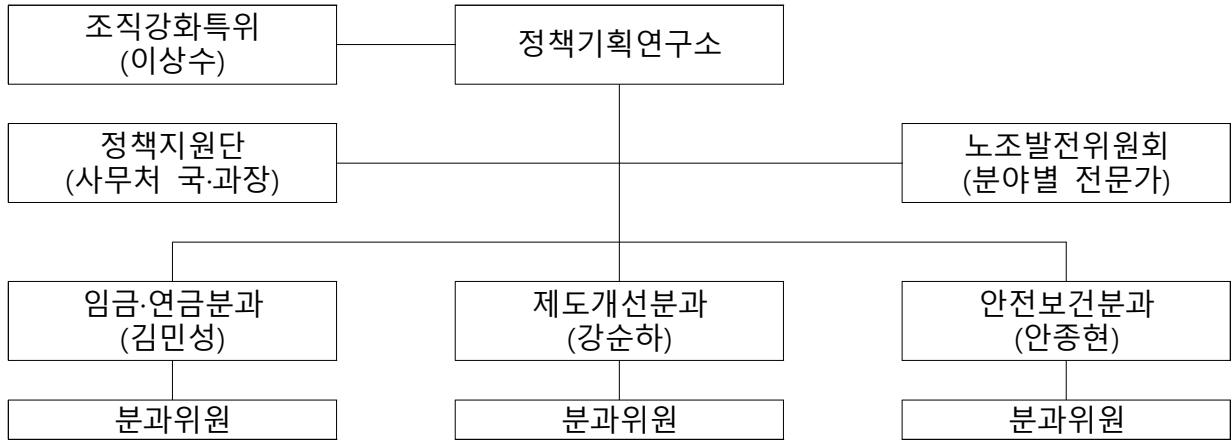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로연수 대상 근속요건(현행 20년 이상 근속 등)을 15년(또는 1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 추진.</li> <li>○ 늦깎이 공무원의 정년퇴직 전 사회적응·전직 준비를 지원하고, 6급 상당 진급적체 완화 등 조직 인력순환에 기여하도록 개선.</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공로연수는 장기재직(20년 이상 근속 등)을 전제로 운영되어, 경력전환·늦은 임용 등으로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공무원은 퇴직 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움.</li> <li>○ 퇴직 직전 사회적응·전직 준비가 부족하면 개인·가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확대될 수 있음.</li> <li>○ 공로연수 대상이 제한적이면 조직 차원의 인사 순환과 승진적체 완화 효과가 제한됨.</li> </ul>
세부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근속요건 완화(선택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 1) 20년 → 15년</li> <li>- (안 2) 20년 → 10년</li> </ul> <p style="margin-left: 20px;">※ 단계적 도입(1단계 15년, 2단계 10년) 등 점진적 확대 가능</p> </li> <li>2. 운영기준 보완(남용 방지 +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신청 및 기관 승인 방식 유지</li> <li>- 선정 시 퇴직예정(정년), 직무특성, 조직 인력운영(승진·보직 적체), 연수계획의 실효성 등을 종합 반영하는 기준을 명문화</li> </ul> </li> <li>3.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늦깎이 공무원 퇴직 준비 지원(사회적응·전직 준비), 조직의 인사 숨통 확보 및 진급적체 완화, 업무승계·세대교체 촉진</li> </ul> </li> </ol>

## 9

##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 중 동일·유사 기술분야 공무원 경력 환산율(70%) 상향(100%) 개선

구 분	주 요 내 용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3) 중 1981.12.31.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 /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현행 70%)을 → “동일·유사 기술분야 공무원 경력”에 한해 100%로 상향</li> <li>○ 타 지자체 환경직 등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동일·유사 업무 수행 후 연구직으로 전직·전입한 경력은 공무원 경력으로 100% 산입하도록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것.</li> </ul>
현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연구직 경력환산율표는 동일 연구·지도 분야 경력은 100% 인정되는 반면, 타 직렬에서 동일·유사 기술분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70%만 산입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li> <li>○ 타 지자체 환경직(기술직렬) 공무원으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다 연구직으로 온 인력이 존재하나, 공무원 경력임에도 70%만 인정되어 호봉·보수·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함.</li> <li>○ 동일·유사 분야 민간(법인) 경력은 100%까지 인정될 수 있는 구조와 비교할 때, 공무원 기술분야 경력이 70%로 낮게 인정되는 것은 전문인력 확보를 저해하고 전문성 축적에 장애가 됨.</li> </ul>
세부 요구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산율 상향(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별표3 2. 1981.12.31 이후 경력 / 가. 공무원 경력 / 3) 유사 기술분야 근무경력 70%</li> <li>- (개선) “공무원으로서 동일·유사 기술분야 수행 경력”을 100%로 상향</li> </ul> </li> <li>2. 판단기준 명확화(현장 혼선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사 기술분야’ 판단은 직렬명 중심이 아니라 직무내용·담당분야·기관 기능(환경·보건·시험분석·기술지원·지도 등) 중심으로 하도록 기준을 명문화</li> </ul> </li> <li>3. 적용대상 구체화(불이익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자체 환경직 등 기술직렬 공무원 경력이 연구직 직무와 동일·유사한 경우, 전직·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경력으로 100% 산입하도록 지침(해석기준) 병행 마련</li> </ul> </li> <li>4.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경력 인정 형평성 제고, 전문인력 인사교류 활성화, 연구현장 전문성 강화 및 인력운영 효율화</li> </ul> </li> </ol>

## 【정책기획연구소 구성】



### □ 분과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공통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안사업 및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권역별 정책설명회 개최</li> <li>▶ 현안사항 국회 토론회 추진</li> <li>▶ 주제별 소규모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보고서 작성</li> </ul>	
노조발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액(기준)인건비, 나라예산, 감사제도, 연금제도, 악성민원, 임금분야, 언론대응, AI, 안전, 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등</li> </ul>	
기획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교섭(노사협의회), 행안부정책협의체 운영 지원</li> <li>▶ 기타 정부관련 각종 협의 지원 등</li> </ul>	소장 간사
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기획본부 운영 및 노조발전위원회 정책개발 지원</li> <li>▶ 정부, 연구소들의 학회 회보, 언론기고문, 보고서 등을 모니터링</li> <li>▶ 정부 및 국회의 입법 현황 상시 파악</li> </ul>	지원단
임금연금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정년연장, 노후소득공백 해소 정책개발 및 투쟁방향 마련</li> <li>▶ 공무원 보수정책 개발 및 투쟁방향(안) 제시</li> <li>▶ 공무원보수위원회 안건 작성 및 지원</li> </ul>	임금 + 연금
제도개선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공무원의 공통적인 인사, 복무 등 제도개선 사항 연구 개발</li> <li>▶ 노사협의회, 행안부정책협의체 안건 작성 및 지원</li> <li>▶ 연맹 및 조합원 건의 등 개별안건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 등 집행</li> </ul>	제도
안전보건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상사건 대응 매뉴얼 및 공무원 안전보건, 악성민원 분야</li> <li>▶ 직무스트레스·정신건강 관리체계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li> <li>▶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관련 공무원 벌칙 조사 및 대응</li> </ul>	신설

### ○ 분과별 추천 인원

(단위 : 명)

구분	조직강화특위	임금 연금	제도개선	안전보건
위원	1	1	1	1

### ○ 명단 제출 양식

구분	소속	직책	이름	연락처	이메일
위원					

<b>보고 2</b>	<b>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b>
-------------	-----------------------------

□ **광역연맹 담당 일정**

월	화	수	목	금
3/16 기자회견(인사처) 11시 전체	17 공노총	18 전공노	19 공노총	20 민주우체국(청와대) 경찰직협(인사처)
23 전공노	24 공노총 (광역연맹)	25 전공노	26 공노총	27 경찰직협
30 전공노	31 공노총	4/1 전공노	2 공노총	3 민주우체국(청와대) 경찰직협(인사처)
6 전공노	7 공노총	8 전공노	9 공노총 (광역연맹)	10 경찰직협

\* **광역연맹 배정인원 - 각 17명 (부산 6명, 경기5명, 인천 4명, 전남 2명)**

□ **주요 행사 내용**

-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농성 투쟁**
- **청와대 앞 (11:30~13:00)**
  - 종식 선전전
- **인사혁신처 앞 (11:30~15:00)**
  - 11:30~13:00 : 종식선전전
  - ※ 재정경제부 정문 앞 현수막 1인시위(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
  - 14:00~15:00 : 약식 결의대회

■ 진행(안)

○ 청와대 앞

- 11:30 : 단체사진 촬영
- 1인시위(3곳) : ①분수대앞(사랑채앞) ②청운동사무소 앞(도로변) ③피켓보관장소 앞(경복궁담벼락)
- 13:00 : 마무리(피켓 보관 후 장소 공유 )

○ 인사혁신처 앞 (집회신고 완료)

- 11:00 : (도착) 1인시위 피켓확인(천막 농성장 안)
  - ※ 앰프 확인(목상곡, 임을위한행진곡 리허설) - (붙임1)사용설명서 참조
- 11:30 : 단체사진 촬영
- 11:30~13:00 : 1글자 피켓(8글자 피켓) + 1인시위용 피켓(2개)
  - ※ 재정경제부 앞(현수막 1개) 이동 : 2명 (12:30분까지) -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
- 13:00~14:00 : 식사
- 14:00~15:00 : 약식 결의대회 후 해산(아래 프로그램 변경하여 사용)

○ 청와대 앞 1인시위 장소 (1,2,3)



## 약식 결의대회(인사처) - 사회자 카드

### ※ 프로그램(안)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여는발언(조합 임원) → 자유발언1(본부장1), 자유발언2(본부장2) → 자유발언3(지부장1) → 자유발언4(지부장2) → 자유발언5 (※소득공백해당자) → 폐회

### [멘트1] 개회선언

1. 지금부터 공무원 소득공백 해소 촉구 결의대회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2. (사회자 소개)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본부 사무처장 ○○○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 [멘트2] 민중의례

1.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을 염원하며,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이 있습니다.  
- 일동 묵상 -      - 바로 -
3. 영원한 민중의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4. 자리에 앉기전에 소득공백 해소를 마련하지 않는 인사혁신처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쳐 보겠습니다. (구호)
5.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멘트3] 여는 발언

1.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선봉에 계십니다.  
○○○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는 발언을 들어 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호)1.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하라!  
2. 공무원 노후가 파탄난다. 책임회피하는 인사혁신처는 책임져라!  
3. 11년 전의 약속이다. 인사혁신처는 지금 당장 약속을 이행하라!

**(구호외치기)****[멘트4] 자유발언 1,2 (본부장)**

1. 다음은 ○○○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다음은 ○○○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멘트5] 자유발언 3,4(지부장 또는 참석자중)**

1. ○○○ 지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다음은 ○○○ 지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구호외치기)****[멘트7] 자유발언 5 (※ 소득공백 당사자)**

1. 지금 당장 퇴직하고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계십니다.  
○○○ 동지를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멘트8] 폐회**

1.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를 마치겠습니다.

- (구호) 1.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와의 대화에 직접 나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 공무원 생존권을 보장하고, 연금 소득공백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3. 정부는 11년째 방치된, 소득공백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 앰프 사용법1



- ① BAT : 내장된 리튬폴리머 배터리의 전량을 나타냅니다.  
10% 25% 50% 75% 100%의 5개의 LED로 전량을 나타내며 가장 왼쪽의 빨간색 LED는 LOW BAT 시에만 점등됩니다.
- ② ECHO CONTROLLER : 스위치 조합에 따른 에코모드를 조절합니다.
- ③ ECHO : 에코음을 조절합니다.
- ④ BASS : 기타입력에 대한 저음을 조절합니다.
- ⑤ INPUT LEVEL : 기타입력에 대한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⑥ MIDDLE : 기타입력에 대한 중음을 조절합니다.
- ⑦ TREBLE : 기타입력에 대한 고음을 조절합니다.
- ⑧ MIC : MIC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⑨ LOW : 입력된 모든 신호의 저음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⑩ HIGH : 입력된 모든 신호의 고음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⑪ MASTER : 입력된 모든 신호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⑫ MIC : 콘덴서 마이크 혹은 다이내믹 마이크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 ⑬ OUTPUT LEVEL : 기타입력에 대한 출력을 조절합니다.
- ⑭ BOOST : 기타입력에 대한 부스트를 ON/OFF합니다.
- ⑮ AUX/USB : AUX 혹은 USB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 ⑯ FUSE : 250V / 5A의 후즈 용량을 가집니다.
- ⑰ DC42V 2A : 자체 내장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단자입니다.  
동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제공된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⑱ POWER : 세트의 전원을 ON / OFF 하는 스위치입니다.
- ⑲ GUITAR INPUT : 전기 기타를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 ⑳ AUX-IN :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 단자이며 250mV의 감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MP3플레이어나 CD플레이어 휴대폰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AUX1은 AUX2보다 20dB 높은 GAIN으로 입력됩니다.  
기계식 반주기 등 시그널 출력값이 낮은 외부기기는 AUX1에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㉑ Ext.SP : Passive스피커 연결단자입니다.

**앰프를 사용할때만 전원을 켜주시고  
사용후 전원을 반드시 꺼주세요.  
전원을 끄지 않으면 방전되서  
다음 조식이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 ○ 앰프 사용법2



- ① 언어설정 : 초기 전원 "ON" 시 ►► 재생정지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언어설정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을 누르면 한글, 영어, 중국어 자막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② MODE : 초기 화면에서 MODE 버튼을 누르면 외부입력, USB, FM라디오, 블루투스로 변경됩니다.
- ③ 볼륨크기 조절 : VOL-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모듈의 소리크기가 순차적으로 작아집니다.  
VOL+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모듈의 소리크기가 순차적으로 크게됩니다.  
VOL-/VOL+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소리크기에 맞추고 나면 모듈의 전원을 ON/OFF시에도 볼륨 조절값은 변하지 않고 기억됩니다.
- ④ 폴더선택 : USB 또는 TF(마이크로SD)카드 사용 시 메모리 카드안에 별도의 FOLDER를 사용하여 저장하였다면, **F** 를 누르면 메모리에 저장되어진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때 원하시는 폴더로 ◀◀/▶▶ 버튼을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으며, 폴더 진입 후 원하는 음원을 선택 재생할 수 있습니다.
- ⑤ REC(녹음) : REC 버튼을 누르면 LED가 점등되면서 FM / 외부입력 / 마이크입력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성신호가 녹음되어 집니다.
- ⑥ PLAY/PAUSE : USB / TF(마이크로SD) / 블루투스 모드에서 짧게 누르면 선택된 음원이 재생 또는 일시정지 됩니다.  
- FM모드에서 ►►를 짧게 누르면 모든 방송 주파수검색 및 자동저장이 됩니다.  
- 녹음 시 ►►를 누르면 녹음이 정지되며, 재차 누르면 녹음이 재개됩니다.  
- 녹음파일 재생시에는 ►►를 길게 누르면 녹음파일이 재생됩니다.  
- 녹음파일 삭제시에는 녹음파일을 선택하여 PAUSE 상태에서 ►►를 길게 누르면 파일이 삭제됩니다.
- ⑦ VOL+ : USB/TF(마이크로SD)/블루투스 모드에서 vol+ 를 누르면 다음곡이 선곡되어지며, 길게 누르면 VOL 크기가 커집니다.  
- FM 모드에서 누르면 다음선곡으로 변경됩니다.
- ⑧ VOL- : USB/TF(마이크로SD)/블루투스 모드에서 vol- 를 누르면 이전곡이 선곡되어지며, 길게 누르면 VOL 크기가 작아집니다.  
- FM 모드에서 누르면 이전선곡으로 변경됩니다.
- ⑨ 정지기능 : ■ 버튼은 USB/TF(마이크로SD)/블루투스/FM 정지 기능입니다.
- ⑩ 재생방법 선택 : ↻ 버튼을 누르면 USB/TF(마이크로SD) 재생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곡, 한곡, Rando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